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경 찰 청 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8개 분야 총 114명

채용 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항공		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	전의경
			조종	정비					
114명 (계급)	40 (경감)	5 (경감)	7 (경위)	4 (순경)	3 (경위)	40 (경장)	3 (경장)	2 (순경)	10 (순경)

채용 분야	인원(계급)	세부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명)	비고
변호사	40(경감)	변호사 40	경찰청 선발❶
공인회계사	5(경감)	공인회계사 5	
항공	7(경위)	조종 7 (일반 6 / 모의장치운용 1)	경찰청 선발❷
	4(순경)	정비 4	
사이버수사	3(경위)	사이버수사 3	경찰청 선발❸
뇌파분석	3(경장)	뇌파분석 3	
교향악단	2(순경)	바이올린 1 / 비올라 1	

채용 분야	인원(계급)	시·도 경찰청별 채용예정 인원(명)																		비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피해자심리	40(경장)	6	4	2	3	1	1	2	1	8	3	2	1	1	-	2	1	1	1	경찰청 선발❹
전의경	10(순경)	5	2	-	-	-	-	-	-	2	1	-	-	-	-	-	-	-	-	시·도청 선발❺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 접수

❶ 경찰청(본청) **통합선발·신임교육 후 임용 시 시·도청별 TO 배정** 및 교육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❷ 경찰청(본청) **통합선발 후 해당 분야 채용 요구부서에서 배치 시·도청 결정**
❸ 경찰청(본청) **통합선발 후 기존 배정된 시·도청 또는 기관별 TO [붙임1]**에 따라 교육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❹ 경찰청(본청)**에서 선발하며 기존 배정된 시·도청별로 원서접수** 받아 시·도청별 응시자 간 경쟁 및 배치
❺ 각 시·도 경찰청에서 선발하며 응시 시·도 경찰청별로 시험 절차 진행 및 배치

2. 시험 절차 및 일정

주요 안내사항

- '24년 상반기 **변호사 분야**의 경우 **1차 시험이 신체·체력·적성검사로 변경**되며, **원서접수 기간이 타 분야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는 1차 시험 시 서류제출 예정**(양식은 4.1. 공지 예정)이므로 **신체검사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등을 1차 시험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직무수행계획서·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시 등록)
    * 약물검사(TBPE)로 인해 발급시일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되며, **전의경 분야는 응시한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교육기관 입교 안내**
  - 경찰대학(경위 이상): '24. 7. 1.(월) 입교 예정(입교 전 치수 측정 등을 위한 예비소집일도 있음)
  - 중앙경찰학교(경사 이하): '24. 7. 22.(월) 입교 예정
  - **※ 입교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호사 분야

시험 절차	채용 분야	시험 일정			
		시험 종류	시험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변호사	2024. 4. 1.(월) ~ 4. 8.(월) 18:00 <8일간>			
1차 시험	변호사	신체·체력·적성검사	4. 1.(월)	4. 17.(수) ~ 4. 19.(금)	신체·체력검사는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
2차 시험	변호사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4. 22.(월) ~ 5. 22.(수)	5. 24.(금)
3차 시험	변호사	면접시험	5. 24.(금)	6. 3.(월) ~ 6. 11.(화)	**6. 14.(금) 최종 발표**

□ 全 **분야**(변호사 제외)

<table>
<tr><th>시험 절차</th><th>채용 분야</th><th colspan="4">시험 일정</th></tr>
<tr><th></th><th></th><th>시험 종류</th><th>시험 공고</th><th>시험 기간</th><th>합격자 발표</th></tr>
<tr><td>원서접수</td><td>全 분야
(변호사 제외)</td><td colspan="4">2024. 2. 8.(목) ~ 2. 19.(월) 18:00 <12일간></td></tr>
<tr><td rowspan="5">1차 시험</td><td>공인회계사</td><td>서류전형</td><td>2. 8.(목)</td><td>2. 22.(목) ~ 3. 27.(수)</td><td rowspan="4">3. 29.(금)</td></tr>
<tr><td>항공(조종)</td><td>조종실기</td><td>2. 16.(금)</td><td>2. 27.(화) ~ 2. 29.(목)</td></tr>
<tr><td>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항공(정비)</td><td>구술실기</td><td rowspan="2">3. 8.(금)</td><td rowspan="2">3. 18.(월) ~ 3. 27.(수)</td></tr>
<tr><td>교향악단</td><td>연주실기</td></tr>
<tr><td>전의경</td><td>필기시험
※(출제)경찰청/(진행)시도청</td><td>3. 8.(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3. 16.(토)</td><td>3. 22.(금) 17:00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r>
<tr><td rowspan="2">2차 시험</td><td>공인회계사
항공
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td><td rowspan="2">신체·체력·
적성검사</td><td>3. 29.(금)</td><td>4. 8.(월) ~ 4. 27.(토)</td><td rowspan="2">신체·체력검사는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td></tr>
<tr><td>전의경</td><td>3. 22.(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3. 25.(월) ~ 4. 27.(토)</td></tr>
<tr><td rowspan="2">3차 시험</td><td>공인회계사
항공
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td><td rowspan="2">응시자격 등
심사</td><td rowspan="2">해당 없음</td><td>4. 29.(월) ~ 5. 22.(수)</td><td>5. 24.(금)</td></tr>
<tr><td>전의경</td><td>4. 29.(월) ~ 5. 17.(금)</td><td>불합격자
개별 통보</td></tr>
<tr><td rowspan="2">4차 시험</td><td>공인회계사
항공
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td><td rowspan="2">면접시험</td><td>5. 24.(금)</td><td>6. 3.(월) ~ 6. 11.(화)</td><td rowspan="2">6. 14.(금)
최종 발표</td></tr>
<tr><td>전의경</td><td>5. 1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5. 20.(월) ~ 6. 11.(화)</td></tr>
</table>

3.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방법**: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기간**: 2024. 2. 8.(목) ~ 2. 19.(월) 18:00 <12일간>

※ 변호사 분야는 2024. 4. 1.(월) ~ 4. 8.(월) 18:00 <8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 취소 및 응시표 출력기간**

채용 분야	접수 취소 기간	응시표 출력 기간
변호사	4. 11.(목) 09:00 ~ 4. 13.(토) 18:00	4. 11.(목) 09:00 ~ 12. 31.(화) 18:00
공인회계사	원서접수 기간 내	2. 23.(금) 09:00 ~ 12. 31.(화) 18:00
항공(조종)	2. 23.(금) 09:00 ~ 18:00	
사이버수사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항공(정비) 교향악단	2. 23.(금) 09:00 ~ 3. 14.(목) 18:00	
전의경	2. 23.(금) 19:00 ~ 3. 12.(화) 18:00	

※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수수료**

○ 경위 이상 7,000원, 경장 이하 5,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❶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❷

❷ 원서접수 시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제출 필수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 교체 불가

□ 서류제출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기한內 서류 미제출 시 시험응시 불가

채용 분야	제출 기간	제출 서류	제출방법
변호사	4. 1.(월) ~ 4. 8.(월) 18:00限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별첨 파일 참조)	원서접수사이트 첨부 (사이트 내 원서접수 메뉴 클릭 후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에 첨부)
공인회계사	2. 8.(목) ~ 2. 19.(월) 18:00限		
▸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 「원서접수 시」 서류제출 불요			

○ 서류제출일(신체·체력·적성검사) 제출 서류(세부사항은 별도공지 예정)

구분	제출 서류명	발급 장소 및 유의사항
공통	제출서류 총괄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변호사는 1차 시험 전) **제출서류 안내 공고문**에 양식 첨부 예정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 본인 기준 발급,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 본인 기준 발급,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제출 **※ 본인 기준 발급,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은행연합회, 법인 신용정보업자* 발급, 직인 필수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3. 11. 9.(목)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인해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일(신체·체력·적성검사) 이전에 미리 준비** **※ 반드시 봉인 상태로 제출(임의개봉 시 인정 불가)**
	응시자격 서류	해당자격(학위·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발급기관
	가산점 자격증	해당자격 발급기관(홈페이지), 자격증 사본

※ 서류에 대해 형식상 적격성은 접수 시 판단하고, 내용상 적격성은 3차 시험에서 최종 판단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 ①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제출** √ ②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③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며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선택사항을 '공개' 설정 및 신청**
해외 학위 등	▸ 주한공관(아포스티유) 또는 학위 발급국가 재외공관(영사확인)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귀속년도·사업장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4.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등 [붙임2]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복권된 경우는 제외(증빙서류 제출)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자, 계급정년 퇴직경찰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감봉 이상 징계의 경우만 응시요건 결격사유에 해당, 무관한 업무수행 중의 징계는 제외

□ 응시 연령(만 나이 예외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채용 분야	채용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변호사·공인회계사·사이버수사(경위)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3. 1. 1. ~ 2001. 12. 31.
항공(조종)	경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8. 1. 1. ~ 2001. 12. 31.
전의경	순경	21세 이상 30세 이하	1993. 1. 1. ~ 2003. 12. 31.
그 外 전 분야	경장·순경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3. 1. 1. ~ 2004. 12. 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 2/「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5]에 부합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은 **[붙임 7]** 참조

○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붙임 6]에 부합

□ 운전면허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 시**(2. 8. ~ 19.)**부터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6. 11.)**까지 유효**해야 함
- 채용계급이 **경위 이상**인 분야**(변호사·공인회계사·항공[조종]·사이버수사[경위])**는 **운전면허 제출 불필요**

□ 병역: 병역요건 불필요

※ 단, 항공 분야는 최종합격 발표 후 임용('24. 6월 이후, 일자 미정) 전일까지 전역 및 퇴직이 가능한 자

□ 자격증 등 기준일 및 세부 응시요건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구 분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 분야별 세부 응시요건

분 야	응시요건		
변호사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자격증 취득 기준일**: '24. 4. 19.(금)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2년 또는 3년) 등을 이수한 자	
	√ **실무수습 기간 산정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24. 6. 11.) 기준		
항공(조종)	**※ 아래의 응시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자**		
	공 통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24. 4. 27.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일 것)	
	경력	일반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 -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 모의계기 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자
		모의비행장치 운용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 - 모의계기 비행시간 포함 ▸ 모의비행장치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항공(정비)	**※ 아래의 응시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자**		
	자격증	▸ 항공정비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	
	경 력	▸ 회전익 항공기 정비경력 4년 이상인 자 - 최근 3년 이내 항공기 정비경력자에 한함	

분 야	응시요건	
사이버 수사 (경위)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학 위	▸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응용 √ **관련 전공**: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블록체인, AI 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피해자 심리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학 위 + 경 력	▸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학 위	▸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분야**: 심리상담 및 심리학 연구 관련 업무 √ **학위**: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심리학'이 명시된 경우 인정 √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에서 직접 담당한 업무가 심리·상담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경력은 소속기관·단체 등에서 일반 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을 필요(경력증명서상 기재 필수) ※ 학교·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 불인정	
뇌파분석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학 위 + 논문·특허	▸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 또는 특허를 보유한 자
	학 위 + 경 력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업무 √ **관련 전공**: 뇌인지과학과, 인간공학과, 의공학과(바이오메디컬공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심리학과(생리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 범죄심리), 의생명과학과, 전자공학과 관련된 전공 ※ 학위 관련, 전공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 가능하며, 위 열거된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관련 논문·특허**: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학회 논문 발표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특허 √ **근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준하는 국내·외 기관·법인, 민간단체·기업에 소속되어 실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은 소속기관·단체 등에서 일반 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응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을 필요(경력증명서상 기재 필수) √ **연구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 부설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분 야	응시요건	
교향악단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학 위 + 경 력	▸ 해당 악기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국·공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학 위	▸ 해당 악기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분야**: 음악대학 전공자, 실용음악, 음악 예술 분야 등 √ **관련 전공**: 관현악과, 기악과 등 악기연주 관련 학위 ※ 학위 관련, 학과 또는 전공명이 해당 악기 또는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 가능 √ **관련 경력**: 상임으로 연주경력, 악장, 연주단원, 음악협회 소속 활동경력, 방송경력, 해당 악기 군·경찰악대 경력 등 실제 연주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지칭하며, 단순 행정업무는 제외	
전의경	경 력	▸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응시요건 등 안내사항

1. 학위 요건은 **'주전공'과 '복수전공'만 인정**되고,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분야·근무 경력·연구 경력에서 **단순 행정업무는 모두 제외**됩니다.
3. 응시요건에 대해 문의 시 응시요건에 대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에서 심의·결정**됩니다.
4.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5.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5. 단계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변호사 분야는 2차 시험에 해당

시험유형	채용 분야		시험방법
서류전형	변호사 공인회계사		▸ **평가내용 및 배점비율[붙임 3]에 따라 응시자 제출서류 평가**
실기 시험 (과락: 총점의 60% 미만)	항공	조종 (일반·모의)	▸ **(조종실기)** 모의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제자리비행, 장주비행(이·착륙, 상승·선회·수평·강하비행), 계기비행, 비상절차, 승무원 협조 등 비행능력 및 비행안전성을 다수의 위원이 평가
		정비	▸ **(구술실기)** 응시자 1인을 상대로 다수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며, 평가위원이 구술로 질의한 후 응시자가 구술로 답변
	사이버수사 (경위)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		▸ **(연주실기)** 응시자 1인을 상대로 다수의 위원이 해당 악기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주능력, 지식 등을 평가
	▸ **평가내용 및 배점비율[붙임 3]에 따라 평가**		
필기 시험 ※ 응시한 시·도청별 시행	전의경 (과락: 과목별 40% 미만)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3)**: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10:00~11:00, 60분) ▸ **필기시험 범위** - **(형법)**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全 범위 -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기타 상세 안내사항은 [붙임 4] 참조** **※ 문제 이의제기 및 성적공개 기간** 문제 및 가답안 공개: 3. 16.(토) 12:00 / 문제 이의제기: 3. 16.(토) 12:00~3. 17.(일) 12:00 / 확정답안 공개: 3. 18.(월) 18:00 / 필기 성적공개: 3. 27.(수) 09:00~12. 31.(화) 18:00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실기·필기시험)**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비율 및 인원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최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합격인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의경) 답안지 열람

– **(신청·방식)** 필기시험 성적공개 후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신청, 응시한 시도청을 방문하여 1인당 10분 이내 답안지 사본 열람

– **(일시·장소)** 시도청별 지정 일시·시도청 청사 내 별도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열람절차)** 본인 확인(신분증) 및 휴대폰·카메라 등 일체 소지품 별도 보관 조치 후 열람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변호사 분야는 1차 시험에 해당

시험유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23. 11. 9.(목)** 이후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붙임 5, 6, 7]**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 시 합격 결정
체력검사	▸종목식 체력검사 - ①100m②1,000m③악력 ④팔굽혀펴기⑤윗몸일으키기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붙임 8]**에 따라 평가 **※ 응시생의 5% 이내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10, 11]**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결정
적성검사	▸인성·적성검사(총 280문항, 60분)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시험방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 형식·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자격 부합 시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방법**: 1단계 집단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단 계	평가요소	배 점
1단계 집단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1점~10점)
2단계 개별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붙임 13, 14]**	5점(0점~5점)
계	25점	

○ **합격자 결정**: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최종합격자 결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7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항공 사이버수사(경위) 피해자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전의경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6. 임용 관련

□ 공통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용 시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 제한

※ 단, 변호사 경채는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5년간 전보 제한

○ 경찰청 통합선발 분야는 신임 교육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 시 시·도 경찰청 결정(피해자심리·전의경 제외) [붙임1] 참조

※ 단, 항공·교향악단 분야는 배치부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임용유예·채용인원 미달 등 발생 시 결원·치안수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 미배치될 수 있음

※ 임용유예의 경우, 교육완료 후 시·도청 배치는 최초 시·도청 배정 계획에 따라 결원 시·도청에 배치

□ 분야별 임용사항

○ **(변호사)** 수사경과 부여, 총 5년간 수사부서 근무 원칙

– 1차: 1급지 경찰서 직접수사부서 1년 근무

– 2차: 직접 수사부서 및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부서* 4년

* 송무·법리검토 등 필요한 부서

○ **(공인회계사)** 수사경과 부여,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항공)** 항공경과로 임용 후 시·도청 항공대 발령(항공부서 5년 이상 근무 원칙), 신임교육과정 입교(先 임용, 後 교육)

– 단, **모의비행장치 운용요원**은 임용 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 3년간 근무 원칙(3년 후 시·도청 항공대로 전보 가능)

○ **(사이버수사 경위)** 수사경과 부여, 시·도청 사이버부서(사이버수사과)에서 5년간 의무복무

○ **(피해자심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직접 수사부서에서 각 6개월씩 1년간 근무 후 시·도청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內 피해자보호·지원업무 담당으로 5년간 의무복무

○ **(뇌파분석)**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과학수사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교향악단)** 경찰대학 경찰교향악단에서 5년간 의무복무

7. 기타 사항

○ **전의경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기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 수사경과자'를 선발**하여 실습기간 중 전문 수사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순경 임용 시 일반경과 부여, 1년 경과 시 별도 시험 없이 수사경과 부여

8.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내인 2024. 7. 14.(일)까지** education@police.go.kr로 요청 시 반환해 드립니다.

다. 단계별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하단의 인정·불인정 신분증 참고)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

▸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신형여권만 소지**한 경우

* 모바일 신분증은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되므로 인정 불가

라.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장소에 **시험시각 정각**을 넘어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 원서접수 마감은 **'24. 2. 19.(월) 18시 정각**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없으면 원서접수 미완료)**

아. 각 분야 **경력채용에 필요한 여러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학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의 평가요소인 **가산점으로 중복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학위 등 예시】

- 변호사 분야 응시자가 보유한 변호사 자격증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뇌파분석 분야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석사학위는 가산점 인정 불가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 **영어·한국사**(검정제) **성적등록**은 반드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5호

필기시험 유의사항(전의경)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참조

나.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 합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자기기·모자·방석·무릎담요·커블체어·교과서·노트·연습장·참고서**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복도 등)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소지·사용 가능 물품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귀마개*(이어플러그)

* (크기) 귀마개는 귓구멍을 막기에 적정한 크기만 허용되고, 그 크기가 과도한 경우는 불허, (형태)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함

-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①전원 OFF → ②개인 가방에 집어 넣기 → ③가방을 복도 밖에 적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을 OFF하지 않아**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원칙>

1. 해당 분야: 전의경
2. 사용 시간
   - **전의경: 10:20 ~ 10:40** (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3. 사용횟수: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장 건물 현관 출입구가 폐쇄되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득점은 채점 기계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아래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답란의 테두리선 밖을 넘어 주변 답란 가까이까지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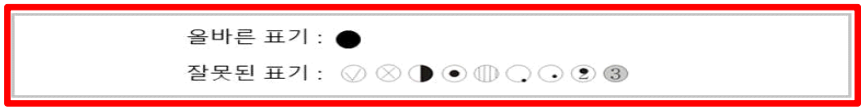

나.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색깔 및 표기된 형태·크기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중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유의사항

가. **공고된 시각**(정각)보다 **늦게 시험장에 도착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녹음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 중 절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작 전, 시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종료 후 반환**됩니다.

다. 직무수행계획서가 필요한 분야**(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원서접수 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단계에서 실격됩니다.**

라.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기시험위원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 및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의 접촉이 금지되며, **질문내용 등 시험 관련 사항의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바. 시험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 단계별 모든 **시험장은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운동장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안내사항을 듣지 못해 불이익이 생긴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23. 11. 9. 이후 발급)에 실시(붙임 7 양식참조)**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등 정밀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바.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통해 합격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신체검사서는**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봉인 상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의개봉 시 인정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채용 분야 시·도 경찰청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 **채용 계급이 경위 이하인 채용 분야만 해당**됩니다.

라.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아.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점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가산점은 최고 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나.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한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서류제출일(신체·체력·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일정, 서류제출, 가산점, 공고문 문언 해석 등**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02-3150-2732)** 또는 **응시 시·도 경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요건에 관한 문의 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됩니다.

분야별 담당부서

△응시자격 요건 △평가내용 △필요 역량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02) 3150-1027
- 공인회계사[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 3150-0881
- 항공[경찰청 항공과]: (02) 3150-1271
- 사이버수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02) 3150-2859
- 피해자심리[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02) 3150-0217
- 뇌파분석[경찰청 범죄분석과]: (02) 3150-2313
- 교향악단[경찰청 경무담당관실]: (02) 3150-0711
- 전의경[경찰청 경비과]: (02) 3150-2462

※ 담당부서 연락처는 부서 개편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경력경쟁채용 분야 및 인원(8개 분야 총 114명)

채용 분야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항공		사이버 수사	피해자 심리	뇌파분석	교향악단	전의경
			조종	정비					
114명 (계급)	40 (경감)	5 (경감)	7 (경위)	4 (순경)	3 (경위)	40 (경장)	3 (경장)	2 (순경)	10 (순경)

채용 분야		계급 (인원)	시·도청별 채용예정 인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호사		경감 (40)	임용 시 배정																			경찰청 선발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조종	경위 (7)																				
	정비	순경 (4)																				
교향 악단	바이올린	순경 (1)	경찰교향악단 2																			
	비올라	순경 (1)																				

채용 분야	계급 (인원)	시·도청별 채용예정 인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이버수사	경위 (3)	1	-	-	1	-	-	-	-	1	-	-	-	-	-	-	-	-	-		경찰청 선발
피해자심리	경장 (40)	6	4	2	3	1	1	2	1	8	3	2	1	1	-	2	1	1	1		
뇌파분석	경장 (3)	-	-	-	-	-	-	-	-	1	-	1	-	-	-	1	-	-	-		
전의경	순경 (10)	5	2	-	-	-	-	-	-	2	1	-	-	-	-	-	-	-	-		시·도청 선발

붙임 2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09:40:01부터)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3 서류전형 · 실기시험 평가내용

<table>
<tr><th>채용 분야</th><th colspan="2">평가내용</th></tr>
<tr><td>변호사
[서류전형]</td><td colspan="2">▸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 수사·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응시자의 수사직무 적합성 판단(직무경력❶, 역량평가❷ 2가지 평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❶ 직무경력</td><td>▸ 경력점수(최대 60점)
관련 경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수행, 법률자문·검토 및 입법 지원 등 법률사무를 말함
▸ 근무기간별 경력 점수
<table>
<tr><td>경력</td><td>5년 이상</td><td>4년 이상</td><td>3년 이상</td><td>2년 이상</td><td>1년 이상</td><td>6개월 이상</td><td>6개월 미만</td></tr>
<tr><td>점수</td><td>60</td><td>50</td><td>40</td><td>30</td><td>20</td><td>10</td><td>0</td></tr>
</table></td><td>60</td></tr>
<tr><td>❷ 역량평가</td><td>▸ 직무수행계획서</td><td>40</td></tr>
</table>
※ "서류전형 평가내용의 근무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일('24. 6. 11.) 기준으로 계산</td></tr>
<tr><td>공인회계사
[서류전형]</td><td colspan="2">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직무경력</td><td>▸ 경력점수(최대 60점)
관련 경력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정, 경제, 재무, 회계, 금융, 보험, 자금운용, 금융 리스크 관리, 자금추적 등 회계사무를 말함
▸ 근무기간별 경력 점수
<table>
<tr><td>경력</td><td>5년 이상</td><td>4년 이상</td><td>3년 이상</td><td>2년 이상</td><td>1년 이상</td><td>6개월 이상</td><td>6개월 미만</td></tr>
<tr><td>점수</td><td>60</td><td>50</td><td>40</td><td>30</td><td>20</td><td>10</td><td>0</td></tr>
</table>※ 응시요건의 실무수습 기간(2년 또는 3년)은 제외</td><td>60</td></tr>
<tr><td>역량평가</td><td>▸ 직무수행계획서</td><td>40</td></tr>
</table>
※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평가내용의 근무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일('24. 6. 11.) 기준으로 계산</td></tr>
<tr><td rowspan="2">항공</td><td>조종
(일반·모의)
[조종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비행능력</td><td>▸ 모의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제자리비행, 장주비행(이·착륙, 상승·선회·수평·강하비행), 계기비행, 비상절차, 승무원 협조 등 비행능력 및 비행안전성 평가
※ 수리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종으로 평가 예정</td><td>100</td></tr>
</table></td></tr>
<tr><td>정비
[구술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정비능력</td><td>▸ 계통별 정비작업의 목적, 정기점검 절차, 주의사항 등 전문지식 평가
▸ 장비운용 절차에 의한 결함 탐구능력 평가</td><td>10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채용 분야</th><th>평가내용</th></tr>
<tr><td>사이버수사(경위)
[구술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전문지식</td><td>▸ ▵시스템(데이터베이스 포함) ▵네트워크(유·무선별) 관련 설계 방법 및 개발, 운영, 정보보안
▸ 디지털포렌식 장치별(디스크, 휴대기기, CCTV 등 멀티미디어) 삭제 데이터 복구와 물리복구 원리 및 복구·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 웹, 모바일, 기타 디바이스 등 프로그래밍 방법
▸ 해킹 피해분석·대응, 디바이스별 악성코드 분석 방법</td><td>100</td></tr>
</table>
</td></tr>
<tr><td>피해자심리
[구술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 rowspan="3">전문지식</td><td>▸ 상담심리학</td><td>40</td></tr>
<tr><td>▸ 심리측정 및 평가</td><td>30</td></tr>
<tr><td>▸ 이상심리학</td><td>30</td></tr>
</table>
※ 과목별 ▵전문지식 수준 ▵답변의 적정성 및 충실성 ▵문제해결력 및 응용 능력 평가
</td></tr>
<tr><td>뇌파분석
[구술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기본지식</td><td>▸ 뇌파의 발생 원리 및 뇌파의 기본 개념 이해
▸ 표준 뇌파 전극 배치, 뇌파 측정 방식 이해
▸ 뇌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이해
▸ 뇌파 잡음의 종류 및 저감 방법 이해</td><td>30</td></tr>
<tr><td>전문지식</td><td>▸ 주파수 분석 등 신호처리 이론 이해
▸ 뇌파 측정 패러다임 및 대표적인 ERP 이해
▸ 뇌파 측정 및 뇌파 분석 방법 이해 및 응용
▸ 분석 결과의 통계분석기법 이해 및 응용
▸ 뇌파 분석 결과의 뇌과학적 해석 능력
▸ 뇌파 분석 툴(tool)의 활용 능력</td><td>70</td></tr>
</table>
</td></tr>
<tr><td>교향악단
[연주실기]</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스케일·
지정곡</td><td>▸ 정확한 음계, 스케일 이해력 등 평가
▸ 연주능력, 기교, 연주법 등 평가
▸ 해당곡 표현력 및 해석력 등 평가
▸ 작곡가 의도 및 표현력 등 평가</td><td>40</td></tr>
<tr><td>오케스트라
엑섭</td><td>▸ 음정이해, 음색 등 평가
▸ 정확한 연주법 및 악상 표현 능력 등 평가</td><td>40</td></tr>
<tr><td>초견곡</td><td>▸ 정확한 악보 연주법 및 표현력 등 평가
▸ 연주능력, 기교, 연주법 등 평가</td><td>20</td></tr>
</table>
※ 지정곡 및 평가곡은 [붙임 3-1] 참조
</td></tr>
</table>

붙임 3-1 교향악단 실기시험 지정곡 및 평가곡

구 분	평가항목
공 통	▸ **지정곡**: 악보 없이 무반주 연주 ▸ **오케스트라 엑섭 및 초견곡**: 악보를 보면서 무반주 연주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엑섭 악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사전 요청 시 악보 제공 가능
바이올린	▸ **스케일**: 당일 심사위원이 지정하는 스케일 연주 ▸ **지정곡**: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 3, 4, 5의 1악장 중 응시자가 원하는 곡 택1(카덴차 포함) ▸ **오케스트라 엑섭** ① Mikhail Glinka - Ruslan and Ludmilla Overture <처음 ~ 레터B 6마디 전까지> ※ 1 ~ 57마디 ② Antonin Dvorak - Slavonic Dances Op. 46, 8 Dances 중 No. 1 <처음 ~ 레터H 전까지> ※ 1 ~ 106마디 ③ Franz Liszt - Les Preludes <35 ~ 53마디, 354 ~ 394마디> ④ Franz Joseph Haydn - Symphony No. 94 - 1악장 <183 ~ 257마디> - 4악장 <처음 ~ 74마디> ▸ **초견곡**: 당일 심사위원이 지정하는 곡 연주
비올라	▸ **스케일**: 당일 심사위원이 지정하는 스케일 연주 ▸ **지정곡**: ① 또는 ②번 곡의 1악장 중 응시자가 원하는 곡 택1(카덴차 포함) ① C. Stamitz Viola Concerto in D ② F. Hoffmeister Viola Concerto in D ▸ **오케스트라 엑섭** ① Mikhail Glinka - Ruslan and Ludmilla Overture <처음 ~ 레터B 6마디 전까지> ※ 1 ~ 57마디 ② Antonin Dvorak - Slavonic Dances Op. 46, 8 Dances 중 No. 1 <처음 ~ 레터E 14마디까지> ※ 1 ~ 80마디 ③ L. H. Berlizo - Roman Carnival Overture <넘버 1 한마디 이후부터 넘버 4 한마디까지> ※ 36 ~ 66마디 ④ P. I. Tchaikovsky - Symphony No. 6 1악장 ※ 19 ~ 79마디 ▸ **초견곡**: 당일 심사위원이 지정하는 곡 연주

붙임 4 전의경 경채 필기시험 안내사항

□ 필기시험 과목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형법	100점	20문항	10:00 ~ 11:00 (60분간)
형사소송법	100점	20문항	
경찰학	100점	20문항	

※ 한국사 ·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 형법: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全 범위

– 경 찰 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3년 제2차 순경 공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024. 3. 11.(월) 09:00 ~ 15.(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가 등록기간[2024.3.11.(월) 09:00 ~ 15.(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붙임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붙임 6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허리휨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붙임 7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시력 ( ) 나안 / ( ) 교정	좌: 나안 (교정)	색 각		청력	좌: db
	우: 나안 (교정)				우: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사 시		
문 신			약물(TBPE) 검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3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8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주요 안내사항('23년 하반기부터 변경)

-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종목 측정 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
  ⇨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특히, 종목별 불합격 기준(1점)이 상향되었으므로 충분한 대비 필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
	좌우 악력 (kg)	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
	좌우악력 (kg)	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 9 종목식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 계측기 2개, 출발신호기 1개 -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400m(200m) 타원형 트랙 / 계측기 2개 /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윗몸일으키기대 /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악력기 **다. 측정방법** -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붙임 10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제2019-1호

Ⅰ.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Ⅱ.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11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_____ 4. 응시번호:_____

5. 핸드폰:_____ 6. 이메일: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

_____

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

_____

_____

※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_____ **전공분야**:_____

주소:_____

전화:_____**팩스**:_____**이메일**:_____

서명:_____**날짜**: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날짜**: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날짜**: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13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어학능력자격증(국어·외국어 등)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붙임 14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77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 1.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 15 필기시험 문제지 · 답안지 견본

'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 -

목 차

- 일반공채(101경비단) -

【헌 법】---------- 00

【형 사 법】---------- 00

【경 찰 학】---------- 00

- 전의경 경채 -

【형 법】---------- 00

【형사소송법】---------- 00

【경 찰 학】---------- 0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police.go.kr

응시자 준수사항

□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③

2.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해당란에 정확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로 표기하고,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표기) 하여야 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1매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됨)

4. 필적 감정용 기재
   (예시)와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편철이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여부,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1)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거나 (2)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분야 코드번호】

분 야	번호
일반남자	01
일반여자	02
전의경경채	03
101단	04
경찰행정학과	05
법학	06
세무회계	07
사이버수사	81
교통공학	91

【응시지구(시 · 도) 코드번호】

응시지구	번호	응시지구	번호
경찰청	01	경기북부청	11
서울청	02	강원청	12
부산청	03	충북청	13
대구청	04	충남청	14
인천청	05	전북청	15
광주청	06	전남청	16
대전청	07	경북청	17
울산청	08	경남청	18
세종청	09	제주청	19
경기남부청	10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을 순서대로 기입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한글성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	(예시) 위 응시자와 동일함.

검인	검인 인 경찰청장	감독관확인란	인

제 1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2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3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4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5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